



▶ 2008. 12.23(화) 배포
▶ 총 7쪽 (사진 없음)

보도자료

▶ 고용서비스기획과장 정형우
▶ 사무관 권혁정
TEL : 02-2110-7141
FAX : 02-503-9330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민간고용서비스시장 육성 도모

- 직업소개 정의 확대하여 헤드헌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 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으로 포함
- 구인기업과 직업소개기관 간 소개수수료 자율화
-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1인업체 가능)
- 형벌의 과태료 전환(규제 완화)

- 오늘(08.12.23)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직업안정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소개의 정의를 확대하여 헤드헌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를 직업안정법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 아울러, 관련 규정을 고쳐, 주로 전문직,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헌터 기업이 구인자 의뢰를 받아 구인기업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는 경우 구인기업은 물론, 응모자로부터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 또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구인기업과 직업소개기관 간 소개요금은 자율화된다.

- 구인기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간 소개요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쟁을 통한 민간고용시장 발전을 유도하고, 민간 고용 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 아울러, 직업소개업체에 두는 직업상담원의 고용의무를 법률상 명확히 하면서,
 - 다만 동거 가족이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별도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한편,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완화도 함께 이루어진다.
 - 소개요금과다 징수, 선금금 징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때,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경우 등 4건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동 개정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이번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소개·모집대행 등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고용시장 육성 및 활성화가 도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1) 직업소개 정의규정 신설 및 확대 (안 제2조의2 제2호·8호 및 제9호)

□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최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업(서치펌, 헤드헌터 등)이 출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문화되고 대형화된 고용서비스 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 이들 서치펌, 헤드헌팅사업, 근로자모집대행사업 등도 이를 직업안정법 영역에 포섭, 종합고용서비스사업이 가능하도록 함(법안 제2조의2 제2호)
- 법 제2조의2 제9호를 신설 “고용서비스”란 구직자 또는 구인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규정

□ 기대효과

- 특히, 신규사업자는 1회 등록만으로 직업소개 및 모집대행 등 종합고용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므로 민간고용시장 육성 및 활성화 기대

(2) 요금상한제 완화 (안 제19조제3항 등)

□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현행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초과 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법 제19조제6항)
- 이에 따라, 고급인력소개업체·헤드헌팅 업체 등은 상대적

으로 질 높은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동 요금제한 규정이 전문화·대형화의 한계요인으로 작용

※ 규제대상(민간고용서비스 기관) : '07.6월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국내 6,682개소, 국외 66개소), 직업정보제공사업자 380개소, 근로자 공급사업자(국내 40개소, 국외 3개소)

○ 따라서 구인기업에 대한 수수료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자율 결정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새로운 고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동기를 가지게 됨.

- 다만, 구직자에 대한 요금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대효과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고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직업상담원 의무고용 규정을 임의사항으로 규제완화 (안 제22조제2항)

□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직업상담원 고용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을 없애고, 대신 직업상담원이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이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한다면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등) ① (생략)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등) ① (현행과 동일)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

<p>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u>1인 이상 두어야 한다.</u></p> <p>③ (생략)</p>	<p>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u>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u>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	--

□ 기대효과

- 실질적 규제완화로 민간고용서비스사업 활성화 기대

(4)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한 법률상 근거보완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외공급근로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근거를 모범에 명확히 규정 (안 제33조)

□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현행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관한 요건 등을 포괄적인 법률의 위임 또는 재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온 문제점이 있었음
- 또한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허가의 대상과 요건’에 국한되고 “국외공급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근거가 명확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기대효과

- “국외공급근로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에 부합

(5) 결격사유 유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안 제38조)

□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직업안정법」 제38조제3호는, ‘이 법,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직업소개사업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
- 이 때, ‘벌금’의 경우 벌금 납부시점(집행종료)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3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우려
- 따라서 법 제38조제3호를 아래와 같이 보완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세분하여 명확하게 규정

□ 기대효과

- 결격사유 규정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민간고용서비스업의 질서유지에 기여

(6)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안 제48조, 제49조)

□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법률 위반에 대한 중복적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이후, 벌금형 이상 선고시 등록취소 처분 등) 및 전과자 양산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 비용'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있음
 - 아울러, 법 위반시 적발(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로 절차비용 증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장기간의, 복잡한 행·사법 절차를 거쳐 제재내용을 확정)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 내용 결정 필요
- 따라서, 단순한 사실행위, 기타 경미한 명령위반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미약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
 - 소개요금과다 징수, 선불금 징수, 18세미만 구직자의 경우 친권자 취업동의서 받지 않은 때 등 4건 대상

※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1항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와 형평 고려

□ 기대효과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 내용 결정 및 규제 완화

(7)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